

#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21. 8.

◀ 목 차 ▶

요 약

1. 구직급여 상·하한액 현황 / 1

가. 우리나라 / 1

나. 국제비교(OECD) / 4

2. 문제점 / 7

가. 도덕적 해이 유발 / 7

나. 기금 재정건전성 훼손 / 8

3. 개선방안 / 10

가.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 / 10

나. 구직급여 지급 시 무급휴일 제외 / 10

## < 요약 >

### 1. 구직급여 상·하한액 현황

**가. OECD 국가 중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하한액 ÷ 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가 가장 높음. 반면 구직급여 상한액 비율(상한액 ÷ 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가 상대적으로 낮음(2018년 기준).**

※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의 OECD 평균값은 20.5%(하한액이 있는 20개국), 구직급여 상한액 비율의 OECD 평균값은 66.1%(상한액이 있는 29개국)

**나. 구직급여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하한액 ÷ 상한액)은 우리나라(100%)가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국 중 가장 높음(2018년 기준).**

※ 구직급여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 OECD 평균값: 40.0%(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19개국).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터키도 62.4%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임.

※ OECD 자료(TaxBEN 2018 Policy tables)는 우리나라 정부가 '16년 또는 '17년 초 OECD에 보고한 자료로 추정(우리나라는 관련 법 개정 지연으로 '16년과 '17년 3월까지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단일적용된 바 있음)

※ '21년 기준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은 91.1%

**다. 높은 하한액·낮은 상한액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 중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적용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 구조(2019년 기준)**

※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96년 4.3%에 불과했으나, '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19년엔 81.2%에 달함.

### 2. 문제점

**가. (도덕적 해이 유발)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 유발**

▶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짧게 일하고 잦은 이직을 하면서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을 조장해 실업자의 구직활동 저해

※ 구직급여월액 계산식(무급휴일 포함)과 최저임금월액 계산식(무급휴일 제외) 차이로 구직급여(하한액 수급자)가 최저임금의 99%에 달함('21년).

▶ 전일제(주40시간 근무) 근로자 기준 구직급여월액과 최저임금월액('21년)  
[구직급여(하한액 수급자)] 1,803,600원 vs. [최저임금] 1,822,480원

**나. (기금 재정건전성 훼손)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 이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훼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추정**

- ▶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0조원에서 2019년 8.1조원으로 61.0% 증가. 이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지급수준 상향(50%→60%), 지급일수 연장(90~240일→120~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2020년 지출 급증은 코로나19 영향에 주로 기인)

※ 구직급여지출액(조원): 4.7('16)→ 5.0('17)→ 6.5('18)→ 8.1('19)→ 11.9('20)

- ▶ 실업급여계정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증가로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 지속

※ 실업급여계정 수지(조원): 1.2('16)→ 0.9('17)→ -0.3('18)→ -1.4('19)→ -0.3('20)

**3. 개선방안**

**가.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

**(1)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폐지**

- ▶ 구직급여 하한액이 고용보험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의 지급방식\* 마련 필요

\* 대안: ① 정액형 + 물가연동제, ② 정률형(별도의 기준보수 책정)

**(2) 구직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연동비율 인하(現 80%→ 60%)**

- ▶ 현행처럼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할 경우에는 연동비율을 하향 조정해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도모

**나. 구직급여 지급 시 무급휴일 제외**

- ▶ 구직급여는 실직기간 임금을 대체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현행 구직급여 지급 시 포함되어 있는 무급휴일(예. 토요일)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이 경우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일단위(120~270일)에서 월단위(4~9개월)로 변경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함.

# 1 구직급여 상·하한액\* 현황

\*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개념은 첨부(11p) 참조

## 가 우리나라

① **(상·하한액 수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상한액은 66,000원 (일액 기준, 2021년). 구직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은 지속적으로 변동해 왔음.

- **(하한액)**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는 최저임금의 50%였으나, 1998년 최저임금의 70%, 2000년 최저임금의 90%로 상향되었고, 2019년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됨.

\* 단, 경과규정을 두어 최저임금의 80%가 '19년 최저임금의 90%보다 낮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9년 최저임금의 90%(1일 8시간 기준 60,120원)를 지급

- **(상한액)** 1995년 제도 도입 당시 3만 5천원이었으며, 1998년 3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가 2001년 3만 5천원, 2006년 4만원, 2015년 4만 3천원, 2017년 5만원, 2018년 6만원, 2019년 6만 6천원으로 상향 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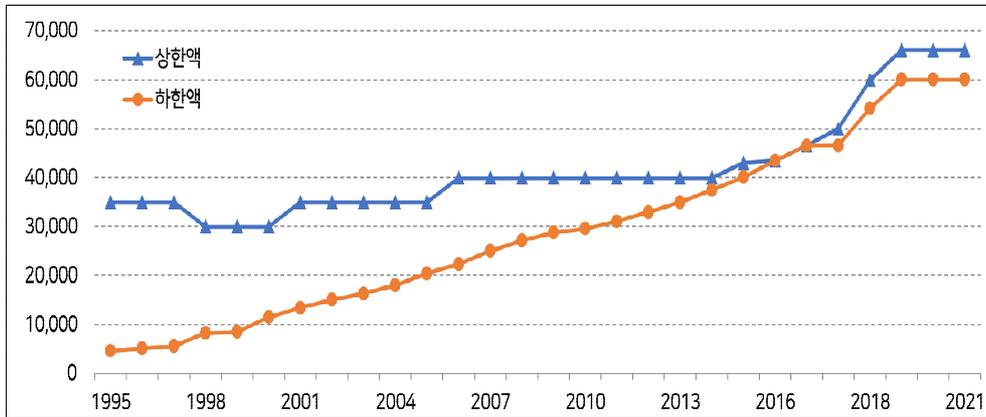
※ 2016년과 2017년 1~3월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일한 이유: 고용보험법 입법 지연으로 동 기간 중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단일적용되었음.

< 표 1. 구직급여 상·하한액(일액 기준) 추이 >

연도	상한액	하한액	연도	상한액	하한액
1995	35,000원	4,680원	2009	40,000원	28,800원
1996	35,000원	5,100원	2010	40,000원	29,592원
1997	35,000원	5,600원	2011	40,000원	31,104원
1998	30,000원	8,316원	2012	40,000원	32,976원
1999	30,000원	8,540원	2013	40,000원	34,992원
2000	30,000원	11,520원	2014	40,000원	37,512원
2001	35,000원	13,428원	2015	43,000원	40,176원
2002	35,000원	15,120원	2016	43,416원	43,416원
2003	35,000원	16,380원	2017.1~3	46,584원	46,584원
2004	35,000원	18,072원	2017.4~12	50,000원	46,584원
2005	35,000원	20,448원	2018	60,000원	54,216원
2006	40,000원	22,320원	2019	66,000원	60,120원
2007	40,000원	25,056원	2020	66,000원	60,120원
2008	40,000원	27,144원	2021	66,000원	60,120원

자료: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 그림 1. 구직급여 상·하한액(일액 기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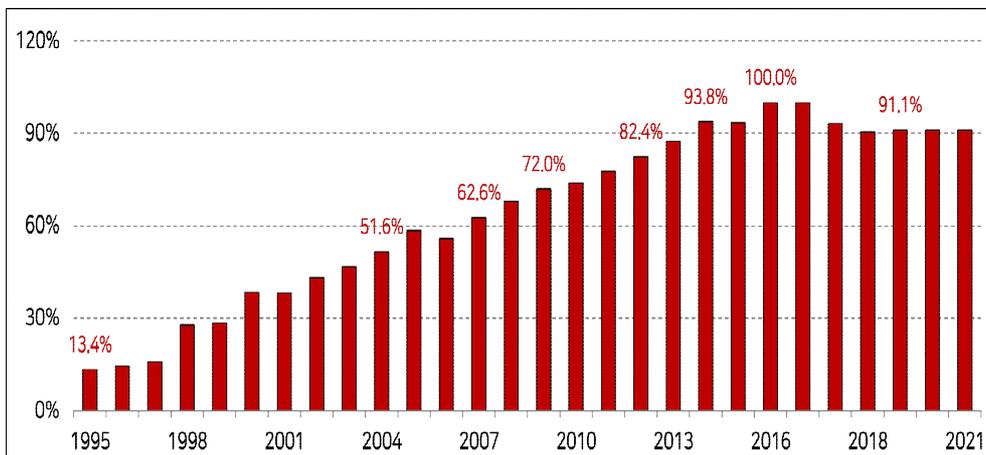
자료: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②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된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유지됨에 따라 상한액 대비 하한액(하한액 ÷ 상한액) 비율은 증가해 왔음.

-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은 고용보험제도 도입 당시 13.4%였음.
- 그러나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도 2004년 51.6%, 2009년 72.0%, 2014년 93.8%로 급증. 2017년 93.2%, 2019년 91.1%로 다소 낮아졌으나, 9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우리 최저임금은 '00년 1,600원에서 '21년 8,720원으로 연평균 8.4% 인상되었으며, 이는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4.5%, '01~'20년)의 1.9배 수준
- ※ 고용보험법 입법 지연으로 '16년과 '17년 3월까지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단일적용. 이로 인해 '16년, '17.1~3월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이 100%였음.

< 그림 2. 구직급여 상한액 대비 하한액(하한액 ÷ 상한액) 비율 추이 >



자료: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③ (상·하한액 수급자 비중)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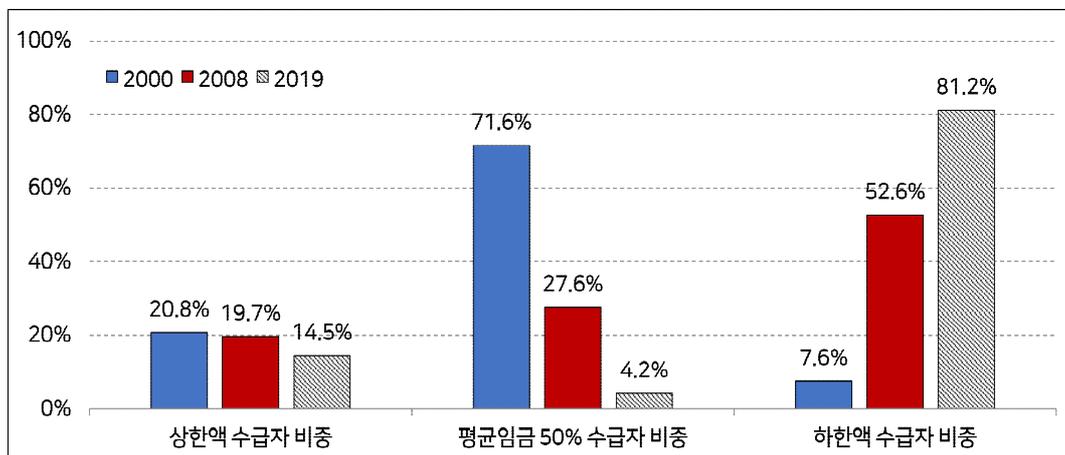
-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1996년 4.3%에 불과했으나, 20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엔 81.2%에 달함.
- 반면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1996년 60.6%에서 2013년 8.8%로 10%대 아래로 떨어진 후 2019년 4.2%에 그침.

< 표 2. 구직급여 상·하한액 수급자 비중 추이 >

연도	상한액	평균임금 50% 적용	하한액	연도	상한액	평균임금 50% 적용	하한액
1996	35.1%	60.6%	4.3%	2008	19.7%	27.6%	52.6%
1997	27.9%	69.1%	2.9%	2009	21.4%	22.8%	55.8%
1998	25.3%	71.0%	3.8%	2010	21.3%	19.0%	59.8%
1999	21.5%	76.7%	1.8%	2011	22.4%	16.2%	61.3%
2000	20.8%	71.6%	7.6%	2012	23.9%	12.5%	63.6%
2001	21.6%	62.5%	15.9%	2013	25.3%	8.8%	65.9%
2002	21.1%	59.5%	19.0%	2014	28.5%	4.5%	67.0%
2003	22.3%	55.6%	22.1%	2015	27.8%	4.3%	67.9%
2004	23.0%	48.5%	28.5%	2016	27.5%	2.1%	70.4%
2005	22.7%	40.3%	37.0%	2017	24.8%	1.9%	73.3%
2006	18.1%	40.1%	41.8%	2018	18.1%	4.2%	77.6%
2007	18.3%	33.3%	48.4%	2019	14.5%	4.2%	81.2%

주: 1. 1996~1998년은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행태(2003)에서 인용  
 2. 2019년은 2019년 9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 그림 3. 구직급여 상·하한액 수급자 비중 변화 >



주: 2019년은 9월 기준 / 자료: 고용노동부

## 나 국제비교(OECD)

① (상한액 수준: 평균임금 대비 비율)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우리나라(42%)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상한액 비율은 우리나라(42%)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2018년)

※ OECD 자료(TaxBEN 2018 Policy tables)는 우리나라 정부가 '16년 또는 '17년초 OECD에 보고한 자료로 추정(우리나라는 관련 법 개정 지연으로 '16년과 '17년 3월까지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단일적용된 바 있음)

- 평균임금 대비 하한액 비율(하한액 ÷ 평균임금)은 우리나라, 네덜란드(39.2%), 포르투갈(28.3%)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한액 비율(상한액 ÷ 평균임금)은 프랑스(229.5%), 스위스(118.8%), 에스토니아(107.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평균임금 대비 하한액 비율의 OECD 평균값은 20.5%(하한액이 있는 20개국), 상한액 비율의 OECD 평균값은 66.1%(상한액이 있는 29개국)

< 표 3. OECD 국가의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국제비교(2018) >

구분	평균임금 대비 하한액 비율(A)	평균임금 대비 상한액 비율(B)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A÷B)
한국	42.0%	42.0%	100.0%
네덜란드	39.2%	101.5%	38.6%
포르투갈	28.3%	70.9%	39.9%
터키	27.1%	43.4%	62.4%
프랑스	26.6%	229.5%	11.6%
벨기에	25.6%	64.9%	39.4%
헝가리	24.6%	41.1%	59.9%
스페인	22.0%	49.0%	44.9%
슬로베니아	21.3%	54.3%	39.2%
스웨덴	21.1%	52.6%	40.1%
핀란드	19.0%	없음.	-
에스토니아	18.0%	107.0%	16.8%
노르웨이	15.2%	60.7%	25.0%
미국	14.1%	34.6%	40.8%
일본	13.7%	51.9%	26.4%
리투아니아	13.0%	70.0%	18.6%
폴란드	12.0%	22.0%	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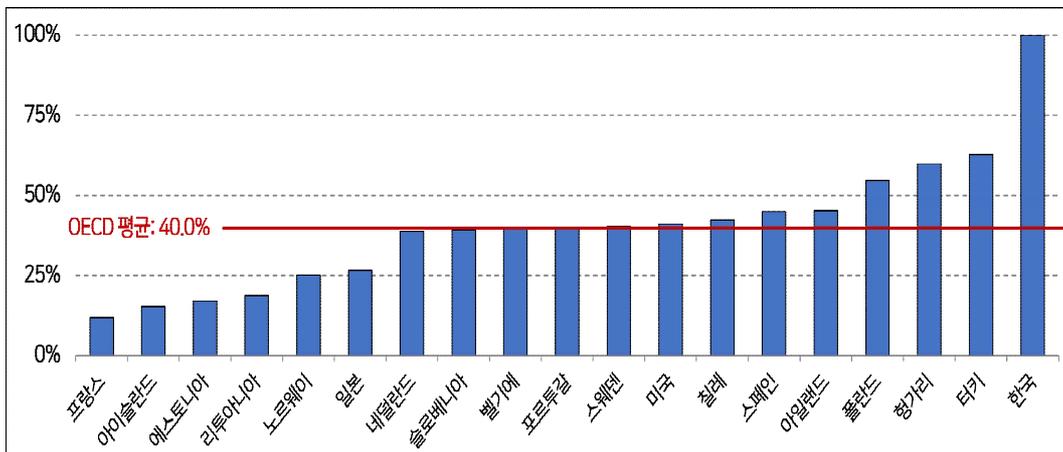
칠레	10.8%	25.6%	42.2%
아일랜드	9.6%	21.3%	45.1%
아이슬란드	7.0%	46.0%	15.2%
스위스	없음.	118.8%	-
룩셈부르크	없음.	100.3%	-
독일	없음.	92.7%	-
슬로바키아	없음.	91.5%	-
이스라엘	없음.	78.0%	-
체코	없음.	53.3%	-
덴마크	없음.	52.7%	-
이탈리아	없음.	50.1%	-
캐나다	없음.	50.0%	-
오스트리아	없음.	41.6%	-
OECD 평균	20.5%	66.1%	40.0%

주: 1. OECD 회원국 37개국 중 7개국 제외(상·하한액이 없는 3개국: 영국, 그리스, 라트비아/실업보험 제도가 없는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관련 자료가 없는 콜롬비아)  
 2.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이 높은 순으로 정렬. 하한액이 없는 국가는 상한액 비율이 높은 순  
 3. 40세 근로자가 단절없이 근로했을 경우의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상한액 비율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TaxBEN 2018 Policy tables

②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국 중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은 우리나라(100%)가 가장 높음. 19개국 평균값은 40.0%였고,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터키도 62.4%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임(2018년).

※ 동 자료는 우리 정부가 '16년 또는 '17년초 OECD에 보고한 자료로 추정(우리나라는 관련 입법 지연으로 '16년~'17년 3월까지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단일적용)

< 그림 4. OECD 국가의 구직급여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2018) >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TaxBEN 2018 Policy tables

③ (상·하한액 설정 여부) OECD 33개국\* 중 29개국이 구직급여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구직급여 하한액을 설정한 국가는 20개국(2018년)

\* OECD 회원국 37개국 중 실업보험제도가 없는 3개국(호주, 뉴질랜드, 멕시코)과 콜롬비아(OECD에 게재된 자료 없음) 제외

-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모두 운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 미국을 포함해 19개국

< 표 4.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설정 여부(2018) >

구분	상한액 없음[4개국]	상한액 있음[29개국]
하한액 없음 [13개국]	<3개국> 영국, 그리스, 라트비아	<10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슬로박
하한액 있음 [20개국]	<1개국> 핀란드	<19개국>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한국,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터키, 미국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TaxBEN 2018 Policy tables

## 가 도덕적 해이 유발

-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 유발
  -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짧게 일하고 잦은 이직을 하면서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급을 조장하고, 실업자의 구직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음.
  - ※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구직급여 인상과 거의 유사. '03년 핀란드에서 구직급여 15% 인상에 대한 연구결과, 구직급여액이 증가한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재취업 확률이 평균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Unsitalo et al. '10년).

※ 최저임금에 거의 근접한 구직급여(하한액 수급자)로 구직활동 저해 우려

- 구직급여월액 계산식과 최저임금월액 계산식 차이(무급휴일 포함 여부)로 구직급여(하한액 수급자)가 최저임금의 99%에 달하는 상황(월액 기준, 2021년)
  - ⇒ 최저임금은 무급휴일(예. 토요일)을 제외하므로 평균적으로 주 6일(근무일 5일 + 법정유급주휴일 1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나, 구직급여는 휴일과 관계없이 실직일(주 7일)을 기준으로 지급

< 전일제(주40시간 근무) 근로자 기준, 2021년 >

⇒ 구직급여(하한액 수급자): 1,803,600원/월 vs 최저임금: 1,822,480원/월

< 구직급여월액과 최저임금월액 계산식[전일제(주40시간 근무) 근로자 기준] >

▶ 구직급여월액 = 시간당 최저임금×8시간×0.8×30일(≒ 7일×4.345주)

- \*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19년).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최저임금의 80%가 '19년 최저임금의 90%(시급 7,515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9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구직급여 하한액	최저임금(A)	6,470원	7,530원	8,350원	8,590원	8,720원
	인상률	7.3%	16.4%	10.9%	2.87%	1.5%
	적용비율(B)	90%			80%	
	하한액(A×B×8)	46,584원	54,216원	60,120원	54,976원	55,808원
	실제 적용 하한액	46,584원	54,216원	60,120원	60,120원	60,120원
구직급여 상한액		50,000원	60,000원	66,000원	66,000원	66,000원

▶ 최저임금월액 = 시간당 최저임금×8시간×6일×4.345주

## 나 기금 재정건전성 훼손

○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 이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핵심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

- **(구직급여 지출)**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0조원에서 2018년 6.5조원, 2019년 8.1조원, 2020년 11.9조원으로 급증

⇒ 2018~2019년 구직급여 지출 증가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지급수준 상향(50→60%), 지급일수 연장(90~240일→120~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

\* 최저임금이 '18년 16.4%, '19년 10.9% 인상(전년비)됨에 따라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도 동일한 증가율로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당 연도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서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2020년 구직급여 급증은 코로나19 영향에 주로 기인

< 표 5. 구직급여 지출액 추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구직급여 지출액	4조 6,862억원 (6.9%)	5조 248억원 (7.2%)	6조 4,549억원 <b>(28.5%)</b>	8조 917억원 <b>(25.4%)</b>	11조 8,556억원 <b>(46.5%)</b>

주: ( )안은 전년비 증가율 / 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

-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 실업급여계정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증가로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 기록

※ 실업급여계정 지출 중 구직급여 지출 비중(%)  
: 80.0('16)→79.9('17)→**81.5('18)**→**82.1('19)**→**85.4('20)**

< 표 6.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 추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입	7조 340억원 (10.9%)	7조 1,476억원 (1.6%)	7조 6,407억원 (6.9%)	8조 4,756억원 (10.9%)	13조 6,287억원 (60.8%)
지출	5조 8,557억원 (6.5%)	6조 2,858억원 (7.3%)	7조 9,157억원 <b>(25.9%)</b>	9조 8,558억원 <b>(24.5%)</b>	13조 8,860억원 <b>(40.9%)</b>
수지	1조 1,783억원	8,618억원	<b>-2,750억원</b>	<b>-1조 3,802억원</b>	<b>-2,573억원</b>

주: ( )안은 전년비 증가율 / 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

※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방식의 문제점

- ① 최저임금 인상률이 명목임금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한액 적용자 비율이 증가하고, **하한액이 상한액을 상회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될 경우 **기금재정을 압박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
  - ▶ 최근 10년('11~'20)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1%로 동기간 명목임금 상승률(5인 이상, 전체근로자) 3.2%보다 2.2배 높음.
- ②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구직급여의 지출 규모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 다만, **최저임금 결정 시 구직급여의 지출 규모는 고려대상이 아님**.
  - ▶ 최저임금 결정기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 3

## 개선방안

### 가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

※ 고용보험법 제45조제2항 및 제4항 개정 필요

#### (1)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 폐지

- 구직급여 하한액이 고용보험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의 지급방식\* 마련 필요

\* 구직급여 하한액 설정 방식 대안

- ① [정액형 + 물가연동제] 구직급여 하한액을 정액형으로 설정하고, 일정기간(예. 3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
- ② [정률형] 최저임금이 아닌 별도 기준보수(예. 평균임금 등)를 책정하고, 하한액을 기준보수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는 방식

#### (2) 구직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연동비율 인하(現 80%→ 60%)

- 현행처럼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할 경우에는 연동비율을 하향 조정(예. 80%→ 60%)해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도모

※ 최저임금 연동방식 폐지 혹은 연동비율 인하 시 상한액 인상 검토

→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비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 현재 주요국에 비해 낮은 구직급여 상한액을 일정수준 상향하는 방안 검토 가능

### 나 구직급여 지급 시 무급휴일 제외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 개정 필요

- 구직급여는 실직기간 임금을 대체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현행 구직급여 지급 시 포함되어 있는 무급휴일(예. 토요일)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구직급여기간을 현행 일단위(120~270일)에서 월단위(4~9개월)로 변경하고, 무급휴일(토요일)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도 무급으로 동일하게 적용

※ 첨부: 구직급여일액과 구직급여 상·하한액 개념 1부. 끝.

- ①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1호)

\*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고용보험법제45조제1항)

- ② **(상·하한액)**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생계보장, 구직급여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방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구직급여 상·하한액\* 설정

\*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

- 하한액: 최저임금일액(시간당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

※ 산정된 기초일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일액보다 적은 경우 기초일액을 최저임금일액으로 보고(법 제45조제4항) 그 8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

- 상한액: 기초일액의 상한인 11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기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 산정방식(2021) >

구분	기초일액	구직급여일액
산정방식	3개월 평균임금일액	3개월 평균임금일액 × 60%
상한액	110,000원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 × 8h	최저임금 × 8h × 80%

자료: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